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1년 1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2월 2일

3. 제안이유

가. 가격표시에 관한 관리권한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조례로 되어 있어 이를 규칙으로 일원화하고

나. 계량에 관한 법률(2000.6.23) 및 석유사업법령(2000.7.29) 개정예 따라 상위법과 불부합된 일부 위임업무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로서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경제통상국(경제과) 소관

-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위임규칙에 삽입

나. 경제통상국(자원관리과) 소관

-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석유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계량 및 석유 관련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경제통상국 경제과소관 업무인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위임자인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되는 사항으로 사무의 위임근거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사무위임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경제통상국 자원관리과소관 업무인 계량기 제작업 등록 업무등 7개 사무와 석유판매업 등록 업무등 6개사무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사무의 위임근거를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는 것임.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기 위임된 사무의 위임근거만 변동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지금까지 사무위임조례로 시군에 위임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사항]

- 사무위임조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지방자치법제95조)
- 사무위임규칙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는 사항

※ 붙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